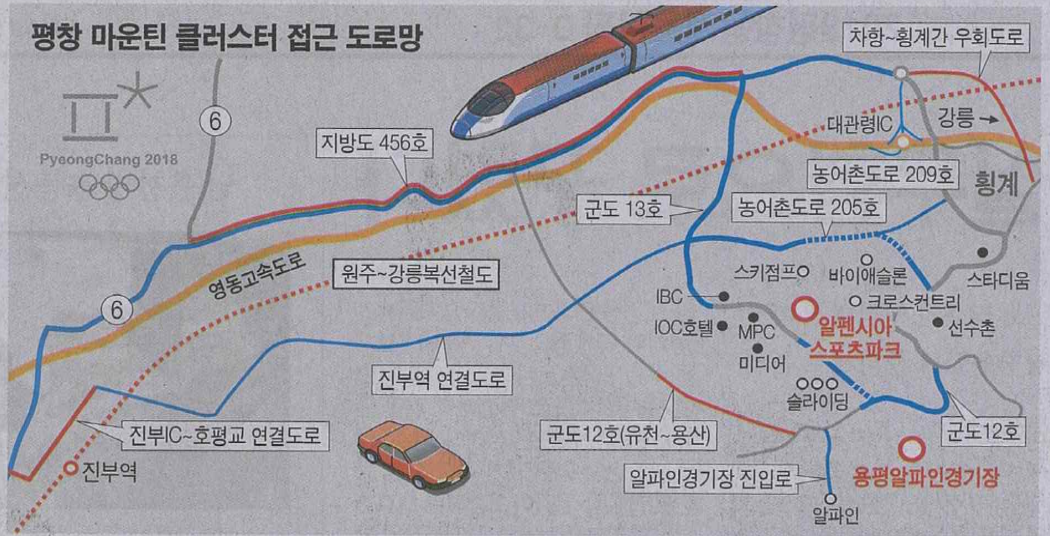


/ '올림픽로드' 이을 내부순환 도로망 완성 /

경강선 KTX와 서울-양양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개량 등 2018 평창동계올림픽 접근 인프라가 모두 완공됐다.

새로 조성된 철도와 고속도로는 수도권과 도를 1시간대에 연결하는 새로운 대동맥이다. 하지만 간선 교통망과 주민 생활공간을 연결하는 길이 없으면 활용도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올림픽을 한 달여 앞두고 철도, 고속도로와 경기장을 연결하는 내부 순환교통망(국도·지방도)도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대동맥에서 갈라져 도내에 '새 피'를 돌게 하는 실핏줄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경강선 KTX와 서울~양양고속도로 등 평창동계올림픽 접근 인프라 완성에 이어 경기장으로 직접 연결하는 접근 도로망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진부~대관령 7분·진부~정선 30분 도착

경강선·서울양양고속도로서 경기장 이어줄 실핏줄 역할  
2차선→4차선 지방도 456호선 대회기간 셔틀버스 이동로  
군도 14호선 관광도로 역할 ... 농산물반출·주민이동 편리

■진부와 대관령 7분만에 달리는 두 갈래 길-7일 평창 대관령 올림픽스타디움 인근에서 지방도 456호선을 이용해 진부역으로 향했다. 4차선의 넓은 도로가 공개 펼쳐졌다. 1차선에는 올림픽 전용 도로를 의미하는 오룡이 선명했다. 횡계를 출발한 지 7분 만에 진부역에 도착했다. 기존에는 구불구불한 2차선 도로를 따라 15분 이상 걸렸다.

지방도 456호선은 올림픽 기간에는 셔틀버스로 경기 관람객을 실어 나르게 된다.

진부와 횡계를 연결하는 더 빠른 길도 있다. 진부역에서 횡계 사이에 터널을 뚫어 평창 알펜시아리조트를 직접 연결하는 군도 14호선은 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990억원이 투입된 군도 14호선은 서로 다른 문화권인 진부와 횡계 알펜시아 일대를 잇는 가장 빠른 길이다. 올림픽 기간에는 선수

단, 스태프 등이 이 길을 따라 이동한다. 올림픽 이후에도 지방도 456호선과 군도 14호선은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한다. 주행환경이 쾌적한 지방도 456호선은 대관령면에서 생산한 고랭지 배추 등 농산물 반출이 용이하고 정체구간을 피해 영동고속도로 진부IC를 이용하는 우회도로 역할을 한다.

군도 14호선의 경우 진부역과 알펜시아리조트를 바로 연결해 관광도로의 가치가 높다.

김두기 평창군 대관령면면영회장은 "지방도와 군도 완공으로 고랭지 농산물 반출이 진부IC까지 편리하게 이동 가능하고 경강선과 영동고속도로 모두 이용할 수 있어 주민들의 이동도 매우 편리해졌다"며 "대관령 일대 리조트를 찾는 관광객들의 접근성도 크게 개선돼 관광객 증가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선~평창 진부 이체는 30분 거리=평창군 진부면 막동리-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19km 구간의 국도 59호선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과 알파인 스키 경

기가 펼쳐지는 정선알파인경기장을 연결한다. 정선에서 진부까지 이동시간이 기존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됐다.

영동고속도로 진부IC와 경강선 KTX 진부역과의 접근성 개선으로 정선 북평면에 조성되는 동계올림픽특구를 비롯한 정선 북부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노보드 등 프리스타일 경기가 펼쳐질 휘닉스 스노파크와 횡성 둔내를 잇는 국도 6호선도 기존 58.8km에서 49.6km로 단축됐다.

횡성 둔내와 진부 간 국도를 이용할 경우 1시간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20분이면 충분하다. 고랭지 지역임을 고려해 농기계 전용차로를 만든 것도 눈길을 끈다.

박재명 도 건설교통국장은 "경기장 진입도로 공사를 완료했으나 폭설 등으로 도로미관이 저해될 수 있어 지속적인 도로관리 실태를 모니터링 중"이라며 "올림픽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명우·김영석·허남운·최기영기자

**함께해요!**  
**차량 2부제 의무시행**  
2018. 2. 10 ~ 2. 25  
\*시행시간: 오전 8시 30분 ~ 오후 7시 30분까지  
**강릉시 동 지역**

**범무법인 일현 변호사 김혜란**

- 춘천여고 (56회)
- 서울대, 사법시험 (45회)
- 서울중앙지방검원 판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2014. 2 퇴직)
- 원주가정법원 · 성폭력상담소장급소 운영위원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등 가사사건과 형사사건은 전문변호사에게!  
☎ 033) 747-8050 ~ 2  
원주시 무실새마을길 14. 범조빌딩3층(무실동)법원 옆

## 아하! 그렇구나

### 국가계약법령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의 효력’

Q

국가계약법령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이 국가 등이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기초하여 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

A

원고들이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원고들이 국외업체로부터 공급받는 부분에 관한 계약금액 고정특약’에 합의한 뒤 국외업체로부터 자재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외화로 지급하였는데, 금융위기로 환율이 상승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위 특약을 이유로 거절당하자, 위 특약이 국가계약법령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국가계약법령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은 공공계약에 대하여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감행규정 또는 효력규정에 해당하고, 이를 배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전원합의체 판결로 “어떠한 특약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특약이 계약상대자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가 등이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특약을 정함으로써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

어야 한다. 그리고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인지는 그 특약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불이익 발생의 가능성, 전체 계약에 미치는 영향,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 체결과정,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라고 하며 국가계약법 규정은 국가 등이 사인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담당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데에 그칠 뿐이고, 국가 등이 계약상대자와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물가변동은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락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가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이동원  
법무법인  
이강변호사

